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3.08.01

- 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나틱시스자산운용(주) (이하 "회사")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 - 1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금전
 - 2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3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금전
 -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 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 등을 평가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6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결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 (법 제 86 조, 법 제 98 조의 2, 법 시행령 제 88 조, 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)
 - 7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 - 8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기구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편입됨
- **제 4 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**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 - ②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제 6 조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(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에는 법제 57 조 제 2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 7 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 190 조 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 8 조(공시)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 9 조(협회에 대한 통보)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.

부 칙 (2023.08.01)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.